2003 대구하계U대회 잉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규정

제정 2016. 4. 1 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 개정 2019. 12. 26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(이하"체육회"이라 한다)체육진흥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로부터 기증받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잉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금의 설치) 2003 대구하계유니버이사드 잉여금을 재원으로하는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특별회계(이하"회계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- **제4조(기금의 사용)** ①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, 기타 운영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
 - 1.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관 건립 및 그 부대시설 구입 사업기금은 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대여하거나 일시 전용할 수도 없다.
- 제5조(기금의 예탁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 - 다만, 경북체육 발전과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에 기여가 있는 지방은행을 우대 할 수 도 있다.
 - ②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을 위하여 만기도래에 따른 재예치는 사무처에서 결정한다.

- 제6조(관리위원회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에 기금 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
 - 1.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2. 위원장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3. 위원은 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- 4.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5. 다만,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본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- 1.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
- 2.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사항
- 제8조(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 - ② 표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.
- 제9조(간사)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
- 제10조(회계관계직의 지정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을 기금관리원, 담당부서장을 분임기금관리원으로 지정한다.
- 제11조(회계검사) 위원장은 기금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감사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12조(보고) 제4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 및 집행사항은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준용규정) 기금관리 등 회계관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체육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공로자 표지 입석)체육회관 건립시 기금 조성 공로자에 대한 공적 표지 입석한다.

제15조(개정 제한) 본 규정의 개정 시 제4조 기금의 사용 목적은 개정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2.26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